



학 사

- 학칙
- 교무규정
- 채플과섬김 운영규정
- 교직과정 운영규정
- 주요 학사제도



학 칙

[시행 2025.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는 본 대학 설립정신에 따라 수요자중심의 교육과 수준 높은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학술을 진흥하며,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은 혁신적 지성 · 글로벌 소통 · 실천적 섬김의 역량을 갖춘 미래형 TOP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편제 및 정원) ① 본 대학에 설치하는 학부(과)편성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본 대학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둔다. 다만,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서울에 두고,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수 및 다중 전공자는 수업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평가에 합격한 자로서 이수한 전교과목에 대한 성적이 평점평균으로 매학기 4.2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30조의7에 따른 학석사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1.〉

제5조 〈삭제〉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6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1년에 2개의 일반학과 별도학기로 구성할 수 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별도학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

③ 일반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개시일 전·후로 개강할 수 있다. 다만, 학기개시일과 개강일이 상이한 경우 개강일을 학기개시일로 본다. 별도학기의 추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9.1.>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일반학기 15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학기는 학점당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학과 연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국가적 재난 등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거나 수업방식 등에 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하계방학, 동계방학, 개교기념일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③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④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7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과 전부(과)

제9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그 입학자격이 상실된다.
2. 고등학교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1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2.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3. 기타 지정한 서류(모집 시에 공고)

제12조(입학정원) ① 입학지원자수가 입학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고사를 실시하되 미달한 때에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선발고사의 종목과 일시는 모집 시에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입학사정) 입학지원자에 대한 사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출신 고등학교 내신 성적, 대학별 고사(필기, 실기 등)성적, 면접고사성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계획 및 개발을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③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구성 하되, 그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입학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입학 또는 졸업 후에라도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입학 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의 경우 등록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한다.

1. 지원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각종 증명서 등 입학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었거나 변조하였을 경우
3. 평가자를 사전에 접촉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 과정에 개입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경우

제16조(입학자의 구비서류 등) ① 입학(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납입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본 대학에서

지시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소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7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자퇴 또는 제적하였던 전공(과)의 동일학년 이하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모집이 중지된 전공(과)이나 본인이 전부(과)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심사에 의해 타 전공(과)으로 재입학 할 수 있다.

②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제3학년 이상에 한하여 매학기 초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정원외로 제2학년 이상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편입학 하고자 하는 해당학년의 전학년 수료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상기 제1호, 제2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되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소지자는 입학정원 외로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학부(과)의 정원의 10% 이내이어야 하고 제3학년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전적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⑤ 편입학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정원외 입학) ① 법령에 의한 정원의 입학대상자 및 외국인 학생은 소정의 평가를 거쳐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제20조(전부(과)) 전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제21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학부형이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한다.

② 보증인의 주소 및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2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납입금의 납부로서 완료된다.

제22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의 장애학생 인정과 학점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마다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2(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① 제4학년 학생 중 직전학기까지 이수한 전교과목에 대한 성적이 평점평균으로 매학기 4.2 이상인 자로서 석사 학위 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졸업(수료)학점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3(입학이 허가된 자의 교과목 수강) ① 입학 허가된 자가 예비대학 개설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학점은 입학 후 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② 입학이 허가된 자의 교과목 수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27.>

제23조의4(연계교육과정 이수자의 교과목 수강) ① 연계교육과정 이수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대학 개설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학점은 10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과정 이수자의 교과목 수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4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신청의 시기에 따라 휴학자의 등록금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

② 일반휴학은 1년 이하로 하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일반휴학 통산 4개 학기를 휴학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추가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II. 학 사

- ④ 군입대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⑤ 창업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 ② 군제대 일자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일 경우 또는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허용 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가증 또는 휴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도교수와 소속 학부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
5. 재학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삭제〉
7.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 7 장 교과 및 이수

제28조(교과목 구분) 교과목은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공과목, 학부(과) 기초 교과목으로 구분한다.

제29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30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본 대학의 설립정신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매학기 채플과 섬김 교과, 사랑의 실천 교과, 기독교소양 교과 등 기독교 인성 관련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7.〉

- ③ 공학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공학도 양성을 위하여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산학일체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혁신융합학부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의2(연계교육과정) ① 고등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약에 의하여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의3(비정규 특별교육과정) ① 본 대학에 이미 설치된 학과 및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비정규 특별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의4(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복수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1.>

제30조의5(평생학습 교육과정 운영) ①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적용의 배제)를 제외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제30조의6(모듈형 융합 교육과정 운영) ① 학부 또는 전공(과)는 전공 내 또는 타전공 간의 융복합을 통한 모듈형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양대학과도 모듈형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 2024.5.27.>

② 모듈형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1.>

제30조의7(학석사연계과정) ① 학부 또는 전공(과)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연계하여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

제31조(수업시간표) 매학기 수업시간표는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시한다.

제32조(학기당 수강학점)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학기당 학점을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8학차 이상의 학생은 19학점 이하로 한다.

1. 일반학기: 12학점 이상 19학점 이하

2. 별도학기: 6학점 이하

② 본 대학이 인정한 타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특별학점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

③ <삭제>

제33조(특별학점 인정) ①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국가 및 민간 자격증 취득과 국가시험 합격자 또는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시험, 국가 공인 어학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점수를 취득한 자에게는 학점을 인정하고 관련 교과목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과 국가 및 산업체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약 등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특별학점은 8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며, 제32조제1항의 학기당 취득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의2(산업인턴제 학점인정) ① 본 대학이 인정하는 국내 · 외의 다른 학교 ·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학습 · 연구 · 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② 산업인턴제 학점인정에 관한 운영 및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21.>

제33조의3(학점의 인정 등) ① 본 대학이 학생(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국내 · 외 다른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매 학기 3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본 대학의 휴학생이 본 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수강신청을 하고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매 학기 6학점 이내에서 등록할 수 있다.

④ 본 대학 입학 전, 국내 고등학교 재학중 대학과목선이수제를 통하여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2과목 6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창업, 평생교육, 온라인 공개강좌 등에 관한 학점인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본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학점을 제외한 학점의 인정은 졸업학점의 1/2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공동 · 복수학위과정의 경우에는 3/4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제 8 장 부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기타 전공 등의 이수

제34조(부전공) ① 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 분야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 이수를 인정하고 학적부와 학위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② 부전공 신청, 자격, 이수, 학점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복수 · 다중 · 융합 · 기타 전공) 복수 및 다중, 융합, 기타 전공의 인정을 위한 이수학점, 졸업성적,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제35조의2(전공예약제 입학생의 전공이수) 전공예약제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9 장 시험 및 성적

제36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수시시험 및 기말시험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출석) 학생은 각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8조(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승인 받지 못한 자는 사유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제3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 실습 및 특수한 과목의 성적은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만 구분하여 P(급) 또는 F(낙)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D 이상과 P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4.5	D+	1.5
A	4.0	D	1.0
B+	3.5	F	0
B	3.0	P	
C+	2.5		
C	2.0		